

#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## 심사보고서

2018. 9. 20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: 2018년 8월 31일
- 나. 제출자: 영등포구청장
- 다. 회부일자: 2018년 9월 7일
- 라. 상정일자: 제209회 영등포구의회 2018년도 제1차 정례회  
제5차 행정위원회(2018. 9. 14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행정국장 김인문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,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위탁사무: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사무
  -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-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

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-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-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상담·홍보
-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- 마을공동체 공모사업
-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○ 주민자치 분야

-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
- 주민자치회의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-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
-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
-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
-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
-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□ 마을자치센터 운영인력(안): 총 11명

- 센터장 1명, 마을팀 3명, 자치팀 2명, 동자치지원관 5명(5개 시범 동별 각1명)

□ 운영방법: 전문기관 선정 민간위탁운영

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

□ 소요예산(2019기준): 금654,480천원(시비)

(단위:천원)

분야	소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마을	290,000	155,927	21,760	112,313	
자치	364,480	287,480	7,000	70,000	
<b>계</b>	<b>654,480</b>	<b>443,407</b>	<b>28,760</b>	<b>182,313</b>	

## □ 관련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04조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(지원센터 설치), 제24조(관리 및 운영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

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목)

-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민간위탁 동의안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 및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제24조,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에 따라, 구청장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무가 민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하여 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안건임.
-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는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와 주민자치회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것으로 하나의 수탁기관에서 마을사업과 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 시 예산지원이 종료된 이후부터는 구 예산으로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하므로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향후 예산 확보 방안 등이 사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,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폐지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, 민간 위탁체 선정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하고, 사업능력, 재정능력,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며, 매년 많은 예산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운영 실적의 엄격한 평가와 보조금 정산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.

## 4. 심사결과: 원안가결

# 마을자치센터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제 4 호
----------	-------

제출연월일 : 2018. 8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## 1. 민간위탁 목적

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을 효율적으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, 마을자치센터를 전문성과 책임성을 갖춘 법인(단체)에게 민간위탁 하고자 함.

## 2. 민간위탁 내용

- 민간위탁 대상사무: 중간지원조직으로서의 마을자치센터 운영 및 관련사무
  - 마을자치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- 마을 공동체 분야사무
    - 마을공동체 기초조사, 사업 분석·평가·연구
    -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·실행 지원
    -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
    -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
    -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·상담·홍보
    - 마을공동체 자원관리
    - 마을공동체 공모사업
    -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  - 주민자치 분야
    - 주민자치학교 운영 및 주민총회 지원
    - 주민자치회의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
    - 주민자치사업단 및 동 자치지원관 운영
    - 주민자치 사례 기록 및 아카이빙

- 민관협력을 위한 합동 워크숍
- 주민자치 운영 모니터링 및 컨설팅
- 그 밖에 주민자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### 3. 민간위탁 추진 일정 및 향후계획

- 2018. 2월: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
- 2018. 3월: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(원안 가결)
- 2018. 9월: 민간위탁 동의안 구의회 상정
- 2018. 9월: 일상감사 의뢰
- 2018. 10월 ~ 11월: 위탁 운영체 모집공고
- 2018. 11월: 수탁체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
- 2018. 12월: 위·수탁 협약체결 및 사무 인수인계

### 4. 민간위탁 소요 예산안(2019년): 654,480천원

분야	소 계	인건비	운영비	사업비	비고
마을	290,000천원 (시비)	155,927	21,760	112,313	
자치	364,480천원 (시비)	287,480	7,000	70,000	

※ 예산은 서울시 지원예산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5.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

- 주민자치회와 마을공동체 사업의 중간지원조직 통합 운영  
: 동일 기관에서 마을·자치사업을 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
- 전문적이고 유연한 중간지원조직 운영
- 마을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시 서울시 예산지원(조건부)

▶ '18년 마을생태계 조성지원사업 현황

- 민간위탁형 : 성동구, 성북구, 도봉구, 노원구, 은평구, 금천구, 강동구
- 민간위탁형 전환 자치구
  - 단체형 ⇒ 민간위탁형 : 영등포구, 양천구, 강서구, 관악구, 구로구, 마포구, 동대문구
  - 직영형 ⇒ 민간위탁형 : 종로구, 서대문구, 동작구
- ※ 구로구, 마포구, 동대문구 민간위탁형으로 전환하였으며, 그 외는 민간위탁 전환 절차 진행중
- 단체형 : 중구, 용산구, 광진구, 중랑구, 강북구, 서초구, 송파구, 강남구

## 6. 법적근거
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」 제22조 및 24조(사무의 위임등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(안)」 제24조 (지방자치단체의 지원)
-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」 제4조
- 「2018년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사업 지원계획 안내」 서울특별시 지역공동체담당관-12600(2017.11.01)호